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6651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고A조합

피고1. B

2. 한국토지주택공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,282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김혜선

별지